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21295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 10. 2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 04. 09

우대빵

정 보 공 개 서

[우대빵]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

전화번호	1661-4980	홈페이지	www.woodaebbang.com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5, 2층(역삼동,아레나빌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우대빵」의 연혁
3. 「우대빵」의 업종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포함) 현황
10. 직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설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등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우대빵부동산 중개법인	우대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5, 2층(역삼동,아레나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5.01	2020.06.26	이창섭	1661-4980	02-2038-3314
	법인등록번호	110111-7473343		사업자등록번호	548-86-0177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창섭	우대빵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5, 2층(역삼동,아레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창섭	1661-4980	02-2038-3314

*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 및 제11조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우대빵」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및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우대빵	-
상 호	우대빵 []점	일반적으로 가맹점 지역명을 기재합니다.
상표(서비스표)	우대빵	등록 40-1688913
광 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현황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988,509	1,322,402	666,107	1,819,981	-1,128,384	-1,056,911
2023년	1,200,434	1,881,545	-681,111	1,880,428	-1,468,550	-1,347,217
2024년	1,039,699	2,548,470	-1,508,771	1,871,126	-945,391	-827,660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은 경영하고 있지 않아 2023년 및 2024년은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매출액이 같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매출액 중 임대료수익 등이 일부 발생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이창섭	대표	2020.05 ~ 2021.04	(주)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 사내이사	경영전반
			2023.12 ~ 현재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5

상기한 직원수는 직영점 인원을 포함하였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우대빵]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이외에 최근 3년 동안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당사가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미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상표		2021/02/02	4016889130000	주식회사 우대빵부동 산중개법인	2031.02.02
권리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 사인물 등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s://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우대빵] 가맹사업 시작일은 2021년 4월 28일입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0년 6월 25일 (개설등록증 발급일))

2. 「우대빵」의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	우대빵	조용석	2021년4월~2022년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43, 202/203호 (화곡동)
			2022년7월~2023년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5, 2층(역삼동,아레나빌딩)
		우동윤	2023년4월~2023년12월	
		이창섭	2023년12월~현재	

3. 「우대빵」 업종

「우대빵」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우대빵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비스	부동산 중개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우대빵」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바로 전 3년간 당사가 운영하는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3	47	6	38	31	7	25	22	3
서울	11	7	4	10	7	3	8	5	3
부산	-	-	-	-	-	-	-	-	-



대구	1	1	-	1	1	-	1	1	-
인천	9	9	-	7	6	1	7	7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31	29	2	20	17	3	9	9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1	1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우대빵」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최근 3개년간 가맹점 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3	36	-	12	3	47
2023	47	4	20	-	2	31
2024	31	2	9	2	-	22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우대빵」 가맹사업 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현황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당사의 「우대빵」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당사를 통해서 중개된 계약건에 대한 매출액을 추정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2)의 매출액은 아래 환산식에 따라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매출산정이 불가능한 3곳(서울 마곡점, 대구점, 인천 선학점)은 평균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 평균추정매출액 산출식 : (각 가맹점 연간 총매출추정액 / 영업일수) X 365(일)

직전 사업연도 말에 광역시도 기준 가맹사업자가 5곳미만인 경우는 지역별 연간평균 매출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22개	97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포함) 현황

당사는 [우대빵]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직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 및 판촉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각각의 개별 광고/판촉비 산정이 곤란하여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 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43,773	143,773	0	
광고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비공개)
판촉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우장산역 종합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77 ES빌딩 1, 2층	1599-9999

상기 예치기관의 예치서류 및 절차는 예치기관의 정책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예치 전 반드시 당사 및 상기 예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당사에서 교부한 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맹계약 후 다음날까지 예치가맹금을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시어 예치가맹금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장 명의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영업 시작일 = 부동산 개설통증 발급일)**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라.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별도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우대빵]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 안함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부가세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개설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의 대가	11,000,000	가맹점 영업개시 이후 반환 안 됨. 단, 오픈 전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정 전 교육비 (2인 기준)	없음 (신규가입)		
	개정 전 교육비 (2인 기준)	1,100,000 (양수)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별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상기 교육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향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양수자인 경우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양수 가맹비는 없으며, 교육비는 상기 내역과 같습니다.



2)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물품대금 및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2,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맹점 양수자인 경우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상기 내역과 같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합계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13,000,000	3,100,000
가입비	11,000,000	-
교육비	-	1,100,000
보증금(부가세 해당 없음)	2,000,000	2,000,000

* 상기 가맹비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예치가맹금의 30%
계약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예치가맹금의 70%
계약체결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예치가맹금의 100%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기타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우대빵]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59.4m²(18평)기준 / 단위:원/부가세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설비/집기	[별첨2 참조]	4,780,500	265,583	계약시 개별협의	설치 및 구비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합계		4,780,500			3.3m ² 당 합계: 금액합계/기준평수

-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가맹점 오픈 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등은 별도로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초도물품 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간판, 사인물 등), 장비/집기 등은 귀하가 필요 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당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 기준

[우대빵]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 귀하가 희망 입지를 선정할 수 있으나 해당 입지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기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 점포는 지상 1층~3층 이하(지층인 경우 계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입 가능)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개정 전 교육과정 이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만20세 이상일 것
소속공인중개사	당사 교육과정 이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만20세 이상일 것
중개보조원	당사 교육과정 이수	직무교육 수료증 만20세 이상일 것



* 가맹점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채용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기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우대빵]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설비/잡기	[별첨2] 참조	계약 시 개별 계약	[별첨2] 참조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상기 초도물품 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간판, 사인물 등), 잡기/잡기 등은 귀하가 필요 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당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 가맹점(중개사무소) 설치 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기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영업을 시작한 후에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가맹 수수료	[별첨3] 참조	가맹본부	[별첨3] 참조	익월 15일까지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광고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자세한 사항은 V-8. 참조)	개별 청구	광고 실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본부	전체행사는 균등분담	개별 청구	판촉활동 실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
시스템 사용료	우대빵관리자 페이지 유지 및 관리비	가맹본부 또는 별도지정 업체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	익월 15일까지	
점포환경 개선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 가맹본부의 경영	개별 청구	실비로 점포개선 이후 반환되지 않음



	등의 노후화 개선 비용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고)		
개정 이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본부	개정 전 교육비는 무료, 개정 후 개별 교육에 따라 협의하여 산정	개별청구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금전지급 의무 불이행 시	가맹본부	연15%		

* 광고분담비에 관하여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광고/판촉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향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변경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가맹계약 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료**는 우대뱅 부동산 개설등록증 발급일로부터 2년간 동 금액의 지급을 면제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업무, 회계 등을 포함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감독 시기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POS, ERP시스템, 회계장부 등)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중개내역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지급기한	비고
갱신비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비소멸성 부분에 한하여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주)우대뱅크부동산중개법인]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우대빵」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우대빵」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 매뉴얼(매물정보, 손님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우대빵]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품목	내역	강제/권장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설비/집기	별첨2 참조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 거래상대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권장품목으로 지정한 ‘부동산계약파일’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지정 거래상대방과 자율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당사가 별도의 공급가 등 거래현황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우대빵]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2024년기준
계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우대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연간 거래총액)	비고
-	-	-	-	-	2024년 기준
계				0	

2) 당사는 [우대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2024년 기준
계					0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고 있는 ‘시스템’은 당사의 특수관계인인 “에스테이트클라우드(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스템운영에 대한 비용은 당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시스템사용료’ 등을 수취하고 있지 않아 상기 건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서 판매·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부동산 중개 용역	아래 설명 참조	우대빵관리자페이지에서 전자파일로 고지 또는 공문 발송	

권장가격(부동산중개수수료)은 법정한도 내 당사 중개정책에 따르며, 전자방식(시스템) 또는 서면 등으로 별도 고지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우대빵]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부동산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우대빵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영업지역이 속한 시, 군, 구별로 중개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시,군,구의 행정동(읍) 한 곳으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후 범위를 정함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고 합의 후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동중개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우대빵]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64%	3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당사는 가맹점/직영점 전용상품의 구분이 없으며,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 가맹계약의 기간

[우대빵]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갱신 시에 **1년** 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2, 아니오→7	D-180 ~ D-90
2.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4, 아니오→3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5,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6	-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8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우대뱅]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공인중개사자격과 실무교육 등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자격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25조 1항 각호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가맹수수료 등의 금전 납입을 1회 이상 연체한 경우	
직원고용시 가맹본부에 통보 및 관할관청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의 변경된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장부 및 회계자료를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활동의 비용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기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이 지급기일까지 미이행된 경우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점포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경우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2조 1항 2호

다만, 당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2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사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제32조 4항
가맹본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가맹본사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사가 약정한 원 · 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2조 3항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지한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교육비 11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업자 간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 영업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직계 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 11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내에 [우대빵]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가맹점이 계약기간 동안 소재한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안에서 경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부동산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우대빵]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0:00 ~19:00	최소영업일 주 5일 이상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 및 일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중개사무소)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관리자페이지	[우대뱅]관리자페이지 작성 성실도	수시	
친절도	계약서 작성 후 고객 만족도	분기별 3회	
계약서, 중개대상확인설명서	계약서 검토 중개대상확인설명서 검토	계약 전	
중개보수 요율 사전청구	권장 중개요율(반값수수료) 변경 시 사전협의 여부 및 중개보수청구권 실행 여부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행사를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 및 부동산 중개용역 제공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 가맹점사업자 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 1개월 전) → 가맹점의 참여 결정 → 광고비 납부
	부동산 중개용역 + 가맹점모집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	-
공동판촉	전체행사	균등분담	균등분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에 따른 부담금 납입
	개별행사	가맹점 부담		-



- * 당사는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 30% 이상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 상기 광고/판촉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향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변경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 부담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약벌이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등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귀하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인 중도 해지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있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귀하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W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귀하가 제33조 제2항의 사유를 제외하고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W10,000,000)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4조 제1항
귀하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사의 고객정보, 매출정보, 계약정보를 접수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영업정보를 유출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 (W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2항
귀하는 제23조(자점매입)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	제34조 제3항



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 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자점매입(사입)한 금액의3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귀하가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 원(W100,000원)의 지체배상금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34조 제4항
귀하가 제25조의 가맹점운영권 제한사항 및 제한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위약별로 1일당 50만원(W500,000원)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제5항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제8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설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IV.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중 1.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14일 이후 계약	
점포 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점포입지 선정/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개설 승인	1일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실측 및 투자비 산출	3일	
도면작성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9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일	
교육	- 중개계약 방법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3~5일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에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서울,경기,인천)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귀하가 관할법원에 대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릅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대뱅」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점본부 부담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율
①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③ 기타비용은 협의	①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②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이나 지원금의 제공 등과 같은 지원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등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경영지도의 범위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귀하는 당사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하는 상기 경영지도의 범위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게 귀하 자신의 점포에 대한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당사는 귀하에게 경영지도 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고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 또는 알선은 하지 않으나 귀하가 원하는 경우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부진 경영지원	가맹점 운영 시 조기 안정화를 위한 경영 지원	미리 요청 시	가맹계약기간	세무, 대출 상담서비스 제공	
경영지원	매출촉진(계약체결)을 위한 경영지원	영업일 기준 2일 전 미리 요청 시	가맹계약기간	매매, 전세, 월세 계약서 검토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우대빵」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신규 교육	기초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3~5일	개업 전 1개월 필수 교육
	심화교육 (계약체결 방법 등)	실습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우대빵」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우대빵」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교육	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교육	협의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및 피고용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강남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5, 2층
2	서울	강서지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6-9번지 201~203호
3	서울	송파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19, 2층 A21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6개월	

상기한 직영점의 영업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본점 : 2020.06.25, 강서지점 : 2020.09.01, 송파지점 : 2023.03.24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1] 재무사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점 설비, 집기품목

(단위: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필수(강제)품목은 반드시 당사(지정업체 포함)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이며 상기 품목 외에 당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품목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매장의 크기에 따라서 비치해야 할 품목의 수량은 유동적입니다
- * 권장품목은 당사에서 지정된 시안 및 규격을 적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발주전 당사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 당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부담은 귀하가 전액 부담합니다.



[별첨3] 가맹수수료 및 지원금

가맹계약서 제15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주우대뱅크중개법인]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는 (중개수수료 배분액) 개별 건수로 발생하는 해당 보수액의 30% 금액으로 한다.

가맹점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매출액)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양측의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 1 호를 제외하고 매수인(임차인) 또는 매도인(임대인)에 대한 중개보수 등이 발생한 경우
3. 제 3 의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로 중개보수 등이 발생한 경우
4. 대출 알선 등 중개와 관련한 업무로 중개보수 등이 발생한 경우
5. 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컨설팅 등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식회사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의 「우대빵」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사항을 보고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의 「우대빵」가맹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일시

정보공개서 수령장소

정보공개서 제공자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서 수령자

(서명 또는 인)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증 (가맹점주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식회사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의 「우대빵」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사항을 보고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의 「우대빵」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일시

정보공개서 수령장소

정보공개서 제공자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서 수령자

(서명 또는 인)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광역지자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구분	상호	소재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자필기재: _____

20 년 월 일

수령자
제공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